

2022 -112

돈의문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공사완료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26호(2006.04.13.)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09-47호(2009.07.24.)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2-21호(2012.04.06.)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종로구 도시개발과-7098호(2017.06.29.)로 부분 준공인가되어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7-95호(2017.07.07.)로 공사완료 고시된 우리구 교남동 62-1번지 일대 돈의문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에 따라 준공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5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사업의 종류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사업의 명칭 :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3. 정비사업의 위치 : 종로구 교남동 62-1번지 일대
4. 사업시행면적 : 152,193.4㎡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최현영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47, 1층 110호(교북동, 동아아파트 상가)

6. 준공인가의 내역

			(㎡)	
공원	공원5	신문로2가 54 일원	727.6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 부지제공 (서울특별시장이 조성) 관리청에 무상귀속
문화 시설	문화 시설	신문로2가 6 일원	9,042.5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 부지제공 [토지는 서울특별시(6,123.6㎡)와 종로구(2,918.9㎡)로 각각 기부채납되며, 시설물은 서울특별시로 기부채납되고 서울특별시장이 조성 및 관리함]

※ 이외 사항은 2017.06.29. 부분 준공인가 시 준공

 공 고

2022 -900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차량소유자가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요청서를 제출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명령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5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공고명칭: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고기간: 2022. 8. 5.~2022. 8. 19.(15일간)
3. 공고대상

196부7718	짚 체로키 2.4	소*두	소유자 요청	2022. 7. 26.	

4. 처분내용

-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운행정지 처분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하고 공고하니, 정당한 권리 없이 자동차 운행을 금지하며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사용자: 자동차 소유자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